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소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과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2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가 건축·임대 및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중소기업 등이 입주하여 경제활동 등을 지원 하는 용도의 건축물 및 주민 등에게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5의 제목“(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가목”을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예비창업자·재창업기업·예비재창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하 이조에서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중 창

- 고의 용도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사가 직접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
2. 주민 또는 입주기업 근로자 등에게 교육·연구·문화·행정·정보통신·보건·복지·체육·유통·교통(제3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새만금사업지역내 중소기업등 또는 산업단지·물류단지 입주기업의 경영·기술개발·기업등 간의 협업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5(공공시설용지의 범위)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u><신 설></u>	제31조의5(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나목----- ----- ----- ----- -----. ②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예비창업자·재창업기업·예비재창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등(이하 이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

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중 창고의 용도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사가 직접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

2. 주민 또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교육·연구·문화·행정·정보통신·보건·복지·체육·유통·교통(제3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새만금사업지역내 중소기업 등 또는 산업단지·물류단지 입주기업의 경영·기술개발·기업등 간의 협업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87